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2-18

# 서 울 고 등 법 원

## 제 3 행 정 부

## 판 결

| | |
|---|---|
| 사 건 | 2016누520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|
| 원고, 항소인 | A |
| 피 고 | [redacted]시장 |
| 제 1 심 판 결 | [redacted]지방법원 2016. 6. 14. 선고 2014구단10582 판결 |
| 변 론 종 결 | 2016. 11. 24 |
| 판 결 선 고 | 2016. 12. 15. |

## 주 문

1. 당심에서 경정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당심 소송비용 중 원고와 경정된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경정전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3. 10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,115,760원(가산세 포함) 및 농어촌특별세 711,5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(당심에 이르러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[1]가 생겨, 이 법원은 직권

1) 당초 부천시 오정구청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, 2016. 7. 4.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오정구가 폐지되고 그 사무가 부천시로 귀속되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2-18

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를 '부천시 오정구청장'에서 '부천시장'으로 경정하였다. 이하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.).

## 이 유

### 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### 2. 결론

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정형식

판사 김복형

판사 남양우